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안 제7조).

II. 검토의견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